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35

2021. 11.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4.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2년도 인건비,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나.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다. 출연내용 :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라. 출 연 금 : 955,386천원

- 인 건 비 : 608,115천원
- 운 영 비 : 347,271천원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지방재정법」[1]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22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출연금 : 955,386천원 (인건비 : 608,115천원, 운영비 : 347,271천원)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 분	2022 요구액	2021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55,386**	**853,318**	**102,068**	**12.0%**
인건비	**608,115**	**522,139**	**85,976**	**16.5%**
급여	476,000	402,001	73,999	18.4%
연차수당	18,662	17,067	1,595	9.3%
초과근무수당	55,982	51,137	4,845	9.5%
퇴직적립금	57,471	51,934	5,537	10.7%
운영비	**347,271**	**331,179**	**16,092**	**4.9%**
4대보험	28,737	22,894	5,843	25.5%
복지포인트	3,000	3,000	0	0.0%
직원 급량비	9,216	9,984	△768	△7.7%
관내출장여비	6,240	6,240	0	0.0%
공공요금 및 제세	18,000	21,434	△3,434	△16.0%
수도전기요금	21,600	18,000	3,600	20.0%
소모품비	38,520	44,505	△5,985	△13.4%
도서인쇄비	6,560	24,160	△17,600	△72.8%
지급임차료	21,000	18,160	2,840	15.6%
수선유지비	12,000	13,492	△1,492	△11.1%
차량유지비	2,293	1,950	343	17.6%
보험료	4,370	3,720	650	17.5%
지급수수료	25,920	51,700	△25,780	△49.9%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0.0%
관서업무비	4,040	4,200	△160	△3.8%
교육훈련비	6,700	6,400	300	4.7%
회의운영비	27,600	21,340	6,260	29.3%
포상금	2,500	0	2,500	순증
자산취득비	78,975	20,000	58,975	294.9%
수선비	0	10,000	△10,000	△1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인지의 설명과 함께, 인건비(재단의 사무국 조직 및 인력 현황 포함 등) 및 운영비의 주요 증감내역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그간 '강남복지재단 관련 연도별 출연금 편성 현황'은 <표1>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또한, '복지재단 예산대비 출연금 비율'은 <표2>와 같은 바, 이의 설명과 함께, 연도별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한 지, 향후 연간 투입 비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지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표1> 복지재단 관련 연도별 출연금 편성 현황(기본재산 제외)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교부액	교부 잔액	비 고
누 계	10,569,397	9,101,092		
2022	955,386			
2021	853,318	853,318	-	
2020	3,035,783	3,035,783	-	
2019	413,734	413,734	-	
2018	322,645	148,000	174,645	
2017	358,781	89,695	269,086	
2016	478,838	464,367	14,471	
2015	1,582,083	1,566,745	15,338	
2014	2,568,829	2,529,450	39,379	

※ 집행부 자료 재구성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장학사업 포함)
2.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사업<개정 2019.12.20.>
3. 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4.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7. 복지관련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운영<신설 2019.12.20.>
8.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신설 2019.12.20.>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호이동 2019.1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표2> 복지재단 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기본재산 제외)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총 예 산	2,886,338	2,666,133	6,740,566	5,024,491	4,410,737
출 연 금	148,000	413,734	1,035,783	853,318	955,386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5.1%	15.5%	15.4%	16.9%	21.6%

※ 집행부 자료 재구성

○ 한편, 출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어 보조금과 다르니 그간 출연금 지원액 및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

※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출자·출연은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금액을 조정 확정할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수도전기요금을 20%나 증액한 이유는

○ 답 변 : 전체적으로 수도전기요금을 포함해서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현재 비즈니스센터 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역삼동으로 내년 초 이전할 예정으로 이전 후에는 현재 2층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을

10층 및 11층으로 이전하고 비즈니스센터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될 예정이므로 수도전기요금 등을 증액하여 산정한 것임.

○ 질 의 : 내년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 답 변 : 강남복지재단 같은 출자·출연기관은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비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해에 사용할 예정임

○ 질 의 : 인건비 및 운영비 중 4대 보험료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강남복지재단의 정원은 13명인데 작년까지는 구청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지원근무를 하다가 올해 구청으로 2명 모두 복귀한 상태임.

내년에는 강남복지재단 직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 강남복지재단 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적어 좋은 자원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추다보니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증액된 것임.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535

제출연월일 : 2021. 11.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2년도 인건비,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출연개요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나.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다. 출연내용 :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라. 출 연 금 : 955,386천원

- 인 건 비 : 608,115천원
- 운 영 비 : 347,271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 요구액	2021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55,386	853,318	102,068	12.0%
인건비	608,115	522,139	85,976	16.5%
급여	476,000	402,001	73,999	18.4%
연차수당	18,662	17,067	1,595	9.3%
초과근무수당	55,982	51,137	4,845	9.5%
퇴직적립금	57,471	51,934	5,537	10.7%
운영비	347,271	331,179	16,092	4.9%
4대보험	28,737	22,894	5,843	25.5%
복지포인트	3,000	3,000	0	0.0%
직원 급량비	9,216	9,984	△768	△7.7%
관내출장여비	6,240	6,240	0	0.0%
공공요금 및 제세	18,000	21,434	△3,434	△16.0%
수도전기요금	21,600	18,000	3,600	20.0%
소모품비	38,520	44,505	△5,985	△13.4%
도서인쇄비	6,560	24,160	△17,600	△72.8%
지급임차료	21,000	18,160	2,840	15.6%
수선유지비	12,000	13,492	△1,492	△11.1%
차량유지비	2,293	1,950	343	17.6%
보험료	4,370	3,720	650	17.5%
지급수수료	25,920	51,700	△25,780	△49.9%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0.0%
관서업무비	4,040	4,200	△160	△3.8%
교육훈련비	6,700	6,400	300	4.7%
회의운영비	27,600	21,340	6,260	29.3%
포상금	2,500	0	2,500	순증
자산취득비	78,975	20,000	58,975	294.9%
수선비	0	10,000	△10,000	△100.0%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